

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민영양
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3 월 15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1854호

붙임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1부.

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.

제3조(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「국민영양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
3.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
4.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4조(영양관리사업)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
2.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 성별·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
3.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4.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영양 · 식생활 교육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·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.

제6조(영양 · 식생활 조사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